

(제152회-본회의 제2차부록)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929
------------	-----

제안연월일 : 2012. 8. 31  
제 안 자 : 이효상의원 외 3명

### 1. 제정이유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4조)
- 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다.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라.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마.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설명회 청구권(안제15조)

###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4. 관련법률 :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나. 구에 소재한 사업체 및 기관에 근무하는 자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정의 계획단계 부터 집행·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참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관되고 구가 협력하는 '주민 주도의 원칙'
2. 주민과 구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시 협력의 원칙'
3. 주민참여자치의 체계를 정립하고 주민참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의 원칙'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중 주민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으로 하고 주민과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는 공모 절차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심의
2. 주민참여 기본계획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3.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관한 연구
4.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2회-본 회의 제2차부록)

-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계획
  2. 감사의 주민참여 계획
  3. 공청회의 주민참여 계획
  4. 구정평가 주민참여 계획
  5.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계획
  6.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7.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8. 그 밖에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8조(행정정보 및 회의자료 등 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내용 중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참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타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재적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감사 단계에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구정평가 주민참여)** 구청장은 구정평가에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 소송,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토론회 또는 설명회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의 정책사업 토론회,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문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회,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⑤ 구청장은 토론회 결과 및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의견조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의 방식에 대해서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회의나 교육에 참여한 지역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심사보고서

## (의안번호 929)

###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2.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제안자 : 2012. 08. 31(금) · 이효상의원 외 3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10. 1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10. 18(목)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효상 의원)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중대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4조)
- 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다.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라.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마.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권(안제15조)

#### 5. 검토의견(행정자치전문위원 손중익)

- 법률 또는 조례로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음.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감사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공공감사에관한법률.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
- 구정평가 주민참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공청회의 주민참여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정보 및 회의자료 등을 주민이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에 대한 개별적 법률이 없다면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조례이나, 본 조례안 핵심내용은 이미 개별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안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판단하시기 바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